

##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6월 30일(장준호의원 외 7명)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7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7월 13일(제2차 교육사회위원회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장준호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장애인복지법(제11조의2)에 규정됨에 따라 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(안 제2조),
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(충청북도지사)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, 임기는 3년으로 하며(안 제3조, 안 제4조),
-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·운영하되, 정기 회의는 년1회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(안 제6조),
-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(안 제7조),
-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,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(안 제8조),
-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하는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제척규정을 두는 것(안 제11조) 등임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중갑)

- 동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,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다만, 의원발의된 조례안임을 감안할 때, 기능 및 위원 구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##### 가. 수정이유

-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특정 직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함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3항제3호 “충청북도 소속 공무원(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)”을 “충청북도 소속 공무원”으로 함

#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# 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년 7월 13일

제안자 : 이범윤 의원외

## □ 제안이유

-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특정 직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,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

## □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3항제3호 “충청북도 소속 공무원(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)”을 “충청북도 소속 공무원”으로 함

#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

## 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3조(구성) ①~②(생략)</b>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</p> <p>1.~2.(생략)</p> <p>3. <u>충청북도 소속 공무원(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)</u></p>	<p><b>제3조(구성) ①~②(제정안과 같음)</b></p> <p>③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</p> <p>1.~2.(제정안과 같음)</p> <p>3. <u>충청북도 소속 공무원</u></p>

#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.
2.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이라 한다)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,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**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·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소위원회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, 1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·조사·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**제8조(간사 및 서기)**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.



**제9조(수당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『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』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**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,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1조(위원의 제척)** ①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제척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장애인복지법

**제11조의2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**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장애인복지법시행령

**제9조의3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구성)**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"지방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